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 Buddhism Magok



영은원

영은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보호자”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CCTV 미설치·미관리 동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부재이거나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법정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친족 순으로 한다.
7. “모니터링”이란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

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은원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 및 종사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노인학대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①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관리책임자 : 대표자(시설장) 임원실

나. 운영 담당자 : 사회복지사 강동원

다. 모니터링 담당자 : 사회복지사 하순정

②관리책임자 외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Ⅰ 관리책임자의 업무 Ⅰ

- ①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②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③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④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⑤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⑥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⑦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책임자는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상적인 관리·유지, 열람 요청의 접수·처리 등 관리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3. 모니터링 담당자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모니터링 하는 것은 금지하는 행위임

제6조(설치구역)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한다.

②침실은 각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별지 제14호 서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다.

제7조(카메라 대수 · 위치 · 성능 · 촬영범위) ①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3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18대(2층 침실 9대, 3층 침실 9대)
2. 공용공간 14대(현관, 1층계단, 엘리베이터, 식당, 2,3층 복도, 2,3층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3. 외부공간 4대(옥상, 주차장 등)

②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호 각호에 따른 장치로써 공동거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 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 130만 화소로, 1초당 10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해 운영하여야 한다.
3.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4. CCTV 촬영범위 : 침실, 공용공간, 외부공간으로 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은 안내판을 규격 30cm×20cm로 하여 시설 출입구 및 시설내 안내 게시판, 외부담장에 설치한다.

②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촬영시간·설치장소(촬영범위)
2.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③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출입구 등)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한다.

④다음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 시설 출입구 및 주변 경계부(담장)
2. 시설 내 안내 게시판

⑤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여 설치한다.

제9조(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HD급 이상(130만 화소 이상)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③CCTV 운영장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2. 모니터는 모니터링 권한이 없는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조치(화면 끄)하여 지정된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한다.
3.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의 보관기간)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서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24시간 상시 촬영·녹화가 원칙이다.(단, 침실 등 수급자의 주 생활장소는 동작감지기능 설정·녹화 불가)

②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 삭제주기) ①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자료는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파기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②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③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④종사자 등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의 존재유무를 요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별지 제8호 서식]자신의 영상정보를 열람한 수급자(또는 그 보호자)가 삭제요청을 한 경우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⑤정정·삭제 요청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그 밖에 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설치·운영점검) ①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13조(영상정보 처리 제한)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열람의 요청시 제출서류) ①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33조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영상정보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16조(영상정보의 열람, 장소 등) ①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조치 시 보호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호자란 수급자의 신상 결정 권한이 있는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친족을 말함.

②CCTV 영상자료의 열람은 해당시설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영상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수급자의 보호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관리책임자)이 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 요청자가 동의 시 관계공무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 등을 입회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④열람의 범위는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열람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시 요양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후 20일 이내 종료

⑤영상정보 사본 등 반출 시,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⑥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한다.

1. 이용일자 및 요청자(성명, 연락처)

2. 파일명/형태/내용

3. 이용목적/사유

4. 이용시간 및 이용장소

5. 담당자 성명 및 확인 서명

⑦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열람의 거부) ①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3항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제33조의3제1항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4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9조(영상정보 보호 조치) ①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설정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 설정

②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③책임자는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자의 금지행위)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4.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행위
5.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모니터링 하는 행위

제4장 보칙

제21조(사무의 위탁) ①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①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영상자료를 열람한 자는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열람자는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p>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현관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엘리베이터 ☐ 기타()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 보호자 대상]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종사자 대상]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 ○ ○ 대표자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 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 **대표자**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 적 사 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램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p>「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 ○ 대표자 귀하</p>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p>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 ○ 대표자</p>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23. . . ~ '23. . . 까지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안내판 설치 장소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여부	잠금장치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치	성명	서명	
1	'23.6.29	60일 정상	확인 √	확인 √	확인 √	무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12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실 18대 (2층 9대, 3층 9대) ○ 공용공간 14대 [현관, 1·2·3층 복도, 생활실, 엘리베이터, 식당,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 외부공간 4대
책 임 자	<p>책임자 : 임원실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41-734-9331</p> <p>운영담당자 : 강동원 사회복지사 [연락처] 041-734-9331</p> <p>모니터링담당자 : 하순정 사회복지사 [연락처] 041-734-9331</p>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 ○ ○ 대표자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 ○ ○ 대표자 귀하